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소방위원회
전문위원 양권석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관계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부서별 권한위임사항의 변경(추가 및 삭제 등)

○ 제2조제1항 별표 1(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)

<투자유치과> : 삭제 9건

-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
 - ▶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(변경)승인
 - ▶ 개발실시계획(변경)승인의 고시 및 협의
 - ▶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
 - ▶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,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등
- 위의 사무가 30만 제곱미터 미만 일반산업단지인 경우
시장·군수 사무

※ 관계법령 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<자원관리과> : 삭제 11건

-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
 - ▶ 석유판매업(주유소·용제판매소)등록·행정처분·등록요건 고시등
 - ▶ 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, 항공유판매업)신고수리, 행정처분 등
 - ▶ 석유대체연료판매업(주유소·판매소)등록·행정처분·등록요건 고시 등

- 위의 도지사 사무가 시장·군수 사무로 변경됨
- ※ 관계법령 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
<하천과> : 추가3건, 삭제1건

- 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및 삭제
 - ▶ 보상금의 공탁,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(추가)
 - ▶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(추가)
 - ▶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(삭제)
- 보상금액의 산정 지급통지 등 조문정비
- ※ 관계법령 :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<관광항공과> : 삭제 1건

- 관광지 지정·조성계획 등의 고시, 위임사무에서 삭제
 - ▶ 관광지 지정·조성계획 등의 고시를 시·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여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인 시·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
- ※ 관계법령 : 관광진흥법

<환경정책과> : 추가 4건

-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추가
 - ▶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등
-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를 시·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,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필요
- ※ 관계법령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

○ 기타 근거법령 조항 등 정비

- 회 계 과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삭제 1건 포함)
- 산림녹지과 :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

○ 제2조제3항 별표 3(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)

<방호구조과> : 추가 20건

- 원거리 민원인의 시간적·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
 - ▶ 소방시설업 등록·변경신고 등 6건

- ▶ 방염처리업 등록·변경신고 등 5건
- ▶ 소방시설관리업 등록·변경신고 등 6건
- ▶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·변경신고 등 3건
- ※ 관계법령 : 소방시설공사업법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, 위험물안전관리법

○ 제2조제4항 별표 4(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)

<총 무 과> : 추가 1건

- 내수면연구소장에게 “6급이하 지방공무원(연구사 포함)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” 위임하는 조항 신설

4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추가·삭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 및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○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
- ▶ 시장·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시·군·위임사무에서 삭제
 - 투자유치과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
 - ✓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(변경)승인
 - ✓ 개발실시계획(변경)승인의 고시 및 협의
 - ✓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
 - ✓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전 사용허가,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등 9건이 30만 제곱미터 미만 일반산업단지인 경우 시장·군수 사무로 되어 삭제
 - 자원관리과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개정에 따라
 - ✓ 석유판매업(주유소·용제판매소)등록·행정처분·등록요건 고시등
 - ✓ 석유판매업(일반판매소, 항공유 판매업) 신고수리, 행정처분등

- ✓ 석유대체연료판매업(주유소·판매소)등록·행정처분·등록요건 고시등 11건의 업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·군수 사무로 변경 되어 삭제
 - 하천과는 「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정에 따라
 - ✓ 보상금의 공탁,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
 - ✓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2건을 추가하고
 - ✓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삭제하며
 - ✓ 보상금액의 산정 지급통지 등 조문을 정비
-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삭제
- 관광항공과의 “관광지 지정·조성계획 등의 고시”업무를 시군 위임 사무에서 삭제하여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인 시·도지사가 고시토록함
 - 환경정책과의 “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변경 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등” 및 “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 신고” 업무등 4건에 대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유지 필요에 따라 시·군위임사무에 추가
 -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의 민원업무중 원거리 민원인의 시간적·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 - ✓ 소방시설업 등록·변경 신고등 6건
 - ✓ 방염처리업 등록·변경신고 등 5건
 - ✓ 소방시설관리업 등록·변경신고 등 6건
 - ✓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·변경신고 등 3건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
-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
- 총무과의 업무중 내수면연구소장에게 “6급이하 지방공무원 (연구사 포함)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” 위임사무 조항 신설
-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등 정비

- 회계과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삭제 1건 포함)
- 산림녹지과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금번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나

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내수면연구소장에게 “6급이하 지방공무원(연구사 포함)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”의 추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

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